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정준호 · 박희승
손명수 · 안호영 · 문진석
서미화 · 전현희 · 황명선
이춘석 · 백승아 · 최혁진
백혜련 · 염태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설치·운영, 교육과정,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

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) ① 대학의 장은 학생이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, 비교과 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3(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)</u></p> <p>① <u>대학의 장은 학생이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, 비교과 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